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2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7조의5(종전의 제7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 실제 부양여부”를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한다.

제7조의6(종전의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5)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5) 제4항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u>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 4. (생략) 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u>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 ---. 1. ----- ----- <u>가구원</u>-----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가구원</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11